

#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

## 03 지원조건 및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-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주 30시간 이상 근로
-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인위적 감원 금지



월 최대 **80만원**      **최장 12개월 지원**  
(최대 960만원)

## 04 청년의 채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- '22.1.1. 이후 채용,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
(단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)

## 05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신청 방법

##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### 기업 신청방법



###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2022년 시행)

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

[더 알아보기](#)    [신청하기](#)
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(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)을 방문하여,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

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

청년과 기업이  
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!

년 특강해!  
**청년  
일자리  
도약장려금  
사업**



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



## 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

## 0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만 15~34세\*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(단,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이어도 가능)  
\*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(최대 만 39세)



### 청년

####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
단,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▲고졸이하 학력 ▲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▲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▲폐자영업자 ▲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 가능



### 기업

####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
단,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, 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 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청년창업기업,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
